

알아봅시다.

축사 화재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절차

박한성
(동양화재보험)

요즘 우리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사방으로 둘러싸여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났던 각종 대형사고들만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들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일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아 피해복구 기간을 최소화 하는 것도 차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많은 위험들 중 여기에서는 축사 건물의 위험에 대하여 알아보고 보험가입과 손해액 평가 및 보상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1. 위험의 종류

위험의 형태는 다양각색이겠으나 축사건물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는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건물내의 전선의 용량, 개폐기나 차단기의 용량 등을 무시한 무리한 사용이나 피복 전선의 노후, 과전류에 의한 발화 등 전기로 인한 화재위험과 벼락(낙뢰)으로 인한 화재 등 여러 가지 화재위험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홍수, 해일, 범람 등의 수재 또는 풍재로 인한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

2. 가입절차

보험계약은 불요식,낙성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양돈업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보험계약자가 제1회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 오후 4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고 보험기간이 만료된 날 오후 4시에 종료된다.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66

보험가입시 보험가액만큼 보험을 가입(전부보험)하므로써 실손보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부 보험가입에 따른 비례보상이나, 초과 보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의 납입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99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는 계약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와 뚜렷한 위험의 변경, 증가에 대하여 계약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때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를 할 수 없다.

한편,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 면적, 용도, 사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요율을 산정하게 되며 여기에 산출된 요율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이다.

즉, 목조스레트집, 세면벽돌조 및 블럭조 스투트집 또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집 등 건물의 구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요율이 달리 산정되며 소화설비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보험요율이 할인되기도 한다. 또한 건물은 하나의 건물을 인수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나의 건물이란 건물의 외벽, 기둥, 보, 지붕(지붕틀)의 어느 한부분이라도 다른 건물과 이어지지 않고 모두 독립된 건물을 말한다.

보험가입전에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는 보험의 목적(건물)의 범위를 명확히하여 둠으로써 차후 손해사정시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유의할 점은 보험계약체결시 계약자가 그 건물에 관하여 알고있는 사항은 모두 보험회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보험계약기간 중, 건물구조의 변경, 다른 계약(중복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보험금액이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계약상의 최고 보상한도액을 말하며 이는 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하게 된다. 반면 보험가액은 법률상 보험회사가 지급해야할 최고 보상한도액이다.

손해보험은 손해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실손해액 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고 초과보험(보험금액)보험가액인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일부보험(보험금액)보험가액) 경우에는 비례보상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가입시 보험가액만큼 보험을 가입(전부보험)하므로써 실손보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부보험가입에 따른 비례보상이나, 초과보험으로 인한 불필

요한 보험료의 납입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험가액의 평가는 원가방식에 의하여 평가대상물건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의 건물을 재축하는데 필요한 재건축비(재조달가액)을 구하고 거기서 사용소모 및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공제 함으로써 현재가액(시가액)을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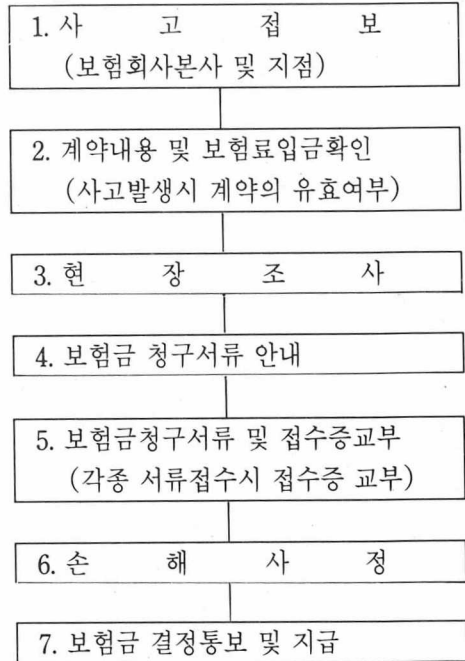
한편,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의 결정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화재로 손해가 발생한 보험목적물을 사고 발생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4. 보상절차

일단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발생통보를 하게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그 계약이 유효한 계약인지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나가게 된다. 현장조사시 이 사고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손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며 화재의 발화원인이 무엇인지,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현장조사를 마치게 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구비할 서류를 안내하게 되며 청구서류가 갖추어지면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체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회사는 손해 발생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며 고객이 회사를 방문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불편을 없애고자, ON-LINE 송금제도 등의 활용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내에 마칠 수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가) 화재보험의 손해사정 업무처리절차



나) 보험금 청구서류 명세

구분	서류명
공통서류	1.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2. 보험증권 원본 또는 사본 3. 사고증명서류 · 사고 경위서(필요시) · 목격자진술서 · 화재증명원(해당 소방서) · 인근주민확인서(당사 양식) · 기타
손해액 입증서류	1. 수리비 견적서 2. 재고 및 손해액 명세서(당사 양식) 3. 물품구입 견적서 또는 영수증(필요시)
소유권 또는 피보험 이익 확인서류	1. 사업자 등록증 5. 임대차 계약서 2. 건물 등기부등본 6. 리스계약서 3. 건축물 관리대장 7. 호적등본 4. 가옥대장 8. 주민등록등본
보험금수령 위임용	1. 주민등록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보험금수령용 및 보험금 수령위임용) 4. 위임장(보험금수령위임) 5. 기타